의안번호: 20006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서

2016. 11.

국회의원 조 정 식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장 경기 시흥을,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법, 예산심의, 국정감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국민을 대변하는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주도하고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마땅히 제지할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거짓답변으로 국정이 파행되는 등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적격한 공직후보자의 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개정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국회의원 조 정 식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서

문 미 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들을 원전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제 기관으로 더욱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7월 제정된「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기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부위원장 직책을 폐지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규제와 관리 및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이 피감기관(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보다 직급이 낮아 현재 상황으로는 협력과 의견조율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 원전안전 규제기관에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는 동 법률안을 제안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안 설 명 서

2016. 11.

국회의원 주 호 영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구수성을) 국회의원 주호영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자는 공직후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직후보자가 실제로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여도 이를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등록의무자보다 더욱 강화된 검증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욱 약한 규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청렴과 도덕성은 책임감을 반증하는 중요한 덕목이며, 앞으로의 업무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모나 자녀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변칙적으로 증여한 뒤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게 되면 이를 밝혀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사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님을 사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2016.8.19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6. 11. 00.

국회의원 홍 익 표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제안이유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로서 다양한 외교 사안에 관한 조정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미국·일본·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4강대사)는 통일 문제 등 한반도 외교관계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국회의 인사통제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조속한 시간 내에 통과되어 4강대사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1) 특명전권대사(러시아연방·미합중국·일본국·중화인민공화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에 한한다)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안 제6조제3항).